

의안번호	2220088
의 퇴 인	조계원의원
회 답 일	2026. 8. 21.
추계번호	26C3415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창작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8조(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영재의 조기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0조(청년예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1조(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2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4조(거점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연장, 미술관 등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건립(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문화시설에 이루어지는 공연·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행사를 주관·주최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법인·개인 및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1조(미술 작품의 공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0	안 제22조(미술 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이하 “미술작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6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33조(창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34조(금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57조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융자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5조(기술 개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개정안의 조문 중 현행 조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문(표 1)과 기존 예산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표 2)의 경우 향후 정책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1]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비교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책과 권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3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장애예술인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18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20조(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21조(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22조(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등)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제23조(장려금 지급 등)
제12조(문화강좌 설치)	제24조(문화강좌 설치)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2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30조(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등)
	제3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3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3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0조(한국예술위원회)
제21조(설립등기 등)	제41조(설립등기 등)
제22조(정관)	제42조(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4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장 등)	제44조(위원장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45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4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관여 금지)	제48조(관여 금지)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4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50조(위원회의 직무)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소위원회)	제52조(소위원회)
제33조(사무처)	제53조(사무처)
제34조(감사)	제54조(감사)
제35조(성과의 평가)	제55조(성과의 평가)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제56조(협의체의 구성)
	제57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
제37조(예술의 전당)	제58조(예술의 전당)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59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국고보조 등)	제61조(국고보조 등)
제40조(감독)	제62조(보고·검사 등)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65조(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신설 조문 관련 주요 사업예산 편성 내역(2026년 본예산 기준)

개정안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안 제7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36억원 시각예술창작육성 37억원 공연예술창작육성 398억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지원 20억원 창작공간활성화 지원 135억원 지역예술도약지원 10억원
안 제8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118억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인력양성 16억원
안 제9조	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내내역미술전문인력 양성 7.5억원
		한국예술종합 학교 운영	내내역예술영재교육 48억원
안 제10조	청년예술인 지원	예술인력육성 K-Art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120억원
		청년창작자 지원	K-Art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원
		체육·문화예 술사업의 지원	내내역청년예술단체 육성 68억원
안 제11조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예술창작지원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56억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내내역미술 작가육성(해외진출, 해외시장 개척) 41 억원
		공연예술진흥 기반조성	내내역K-뮤지컬 시장 활성화 지원 241억원
안 제22조	미술작품 자료제공 요청 등	예술창작지원	내내역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 3억원
안 제26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969억원
안 제33조	창업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기업 지원 65억원
안 제34조	금융지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200억원
안 제35조	기술개발의 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아트코리아랩 운영 96억원 AI 활용 K-아트 혁신 지원 4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 개정안의 조문별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학술활동 지원 등)	• 미대상: 개정안은 현행법 제39조(국고보조 등)에 따른 문화예술 기관·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안 제14조(거점 문화시설의 설치)	• 미대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확충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이미 규정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님
3	안 제57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	• 미대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 중(2026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예산 59억원)으로서, 법정법인 변경에 따라 예산상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안 제1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1조제6항(미술작품의 공모 등)	

2. 상세 사유

가. 예술 관련 활동·행사 운영자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및 지원(안 제16조)

□ 개정안은 문화시설이 이루어지는 공연·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행사를 주관·주최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법인·개인 및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안 제16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6조제2항)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 관련 활동이나 행사 범위와 지원금액 및 비율을 추정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미술작품 공모대행기관 운영 경비 지원(안 제21조제6항)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공모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모대행기관의 역할을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기관에 경비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모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규모를 가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련 연구가 있던 2024년 당시 공모대행 건수는 총 15건이었음(경기 8, 서울 3, 부산 2, 대전 1, 경남 1)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